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15
------------	------

2025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시행 2025.5.15.] [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가 있어,

- 5년 이상 개정이 없던 장기 미정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용어와 문구 등을 알맞게 수정하여 교육 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안 제1조~제9조)

나.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37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개정 사항 반영(안 제38조)

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알맞게 수정(안 제39조~제44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15호로 제출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시행 2025.5.15.][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문구

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 안 제37조)에 대한 검토

-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안 제10조 ~ 안 제37조)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하 ‘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조례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학교(유치원)’,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등으로 되어 있는 조례 23건을 일괄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¹⁾.

[표-1] 「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 개정 현황

구분	조례 제명 유형	사례수
1	•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18
2	• ‘서울특별시립학교’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3
3	• ‘서울특별시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4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	2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은 본안 소송이 나올때까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개정 대상에서 제외됨.

-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폐지
-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
-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 2024년 7월 11일: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2024년 7월 23일: 대법원 집행정지를 인용

구분	조례 제명 유형	사례수
	예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5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누락된 조례 예시: 서울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1

- 그러나 당시 일괄 개정 조례는 조례 제명만 개정한 것으로 개별 조례 조문에 제명이 포함된 것은 개정되지 못하였는바, 금번 동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별 조례의 조항에 조례 제명이 포함된 경우 「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제37조)
- 이에 동 일괄개정조례안 안 제10조~제37조는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명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기타

- 한편 안 제38조는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조직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23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학교보건진흥원’이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는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명(안 제1조) 및 조항 번호(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개정과 인용 조문 오기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39조부터 안 제44조’는 어문 규정 등에 따라 오탈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인바,

이는 법령 상호 간 용어 및 조항을 통일시킴으로써 조례 내용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습니다.

[표-2] 동 일괄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별 현황

조례제명 개정	상위법령 개정	기관명칭 변경	용어·문구 등 수정
31	18	1	12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17조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

1호” 로 한다.

제4조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 를 “제8조” 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5조부터 제6조” 를 “제6조부터 제7조” 로, “제7조” 를 “제8조” 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 를 “제7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 를 “제8조”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 를 “제6조”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별지4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도로교통공단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46조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

레」”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2조2제4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제1항의 적극행정”을 “제1항의 적극행정”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자치법」 제32조”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① (생략)	제8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② ----- ----- -----.		
1.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1. -----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감면)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감면)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	2. ----- -----		

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나. · 다. (생략)

3. · 4.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② (생략)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④ (생략)

-. -----

-----.

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생략)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u>법 제7 조제4항</u> 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법 제7 조제5항</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선정) ----- ----- ----- ----- 제17조의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생략)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조----- ----- ----- -----.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 제6조부터 제7조----- 제8조----- ----- ----- -----. -----.
제10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략)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제10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 ----- 3. 제7조----- ----- 4. 제8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u>제3조</u> 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① ----- ----- <u>제6조</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 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생략)	제9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u>제7조제1</u> <u>항제3호</u> 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 ----- <u>제8조제1</u> <u>항제3호</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 ~ ⑥ (생략)	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표창 추천	6.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제21조(표창의 수여)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표창의 수여) ①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표창) 교육감은「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에 크게 기 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선발) 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준용)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u>「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에 따라 표창할 수 있 다.	제10조(표창)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 에 관한 표창 조례」</u> -----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학부모 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 <u>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u> 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학부모 교육) ① ----- ----- <u>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표창)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 <u>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 <u>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①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 ② ----- ----- -----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별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 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 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 학교	제4조(적용 범위) ----- ----- -----. 1. ·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 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 ----- ---
제20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 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 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20조(표창 등) ① ----- ----- ----- 「서 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② (생략)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 <u>별지4호</u>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u>별지제4호</u>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교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 ----- -----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시</u>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 ----- ----- ----- ----- -----.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단체에 대하여 「 <u>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 ----- 「서울특별시교 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 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비용부담)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도로교통공사</u>	5. <u>한국도로교통공단</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생략)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 ② (생략)	제1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각급 교육기관 “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u>「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u>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u>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 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 이 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 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 등학교와 오디세이학교를 제 외한 학교	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생략)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②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생략)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법 제10조의2제1항----- -----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생략)

제46조(이자)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같은 법 제129조-----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이자) -----
-- 제14조제8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와 제82조에 따른 과오납
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생략)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 치,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 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 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 차지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 ----- ----- ----- 「서 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연수 등) ① (생략)	제5조(연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u>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 ----- ---- <u>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대변인, 총무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 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u>서울</u> <u>특별교육감</u>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구성) ----- ----- ----- ----- <u>서울특</u> <u>별시교육감</u>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① (생략) 제10조(간사) ① (생략)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간사)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위원회</u>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위원회</u>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u>법 제22조2제4항</u> 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 ----- <u>법 제22조의2제4항</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제1항의 <u>적극행정</u>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의 <u>적극행정</u>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교육자치법」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2. ----- ----- -----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 2조-----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